

협회소식 / 74

건축계소식 / 77

해외잡지동향 / 82

법령 / 88

계획작품 / 98

현상설계경기 / 10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2

회원현황 / 106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 벌칙 대폭 강화 방침 반대 제도정비우선 및 형평성에 어긋나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개정안이 입법예고(2000. 8. 4.)됐다.

이는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용승인시 현장조사업무는 건축사가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관련」벌칙은 건축사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도 공무원의제 함으로써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사안에 형법 제227조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사례는 다른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특히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데, 유독 건축사에게만 이러한 형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제출했다.

현재 현장조사·검사업무에 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운영방식 및 업무의 중요도가 각 지방마다 상이하고(예, 서울특별검사원/허가신청시 설계는 건축사가 하며, 지방에서는 제3의 건축사면 가능함),

- ◆ 공무원의 업무를 허가나 사용승인시 건축사에게 강제로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그 운영을 일괄 위임하고 있다.
- ◆ 이에 대한 대가는 수수료 성격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건축법시행령의 수수료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운영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음),
- ◆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타 법률(별첨-참고자료)에도 그 예가 없다.

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성격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속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단순한 행정경비적 성격의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처벌기준 강화는 부당하다.

이사회

8, 9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8회(7월 11일), 제9회(8월 8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8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UIA특별기구(FIKA)구성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FIKA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라는 명칭으로

UIA회원단체로 가입키로 의결)

〈기타사항〉

- UIA특별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9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청주지역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충북건축사회 소속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지역을 관할할 청주지역건축사회를 설치키로 의결함)

〈협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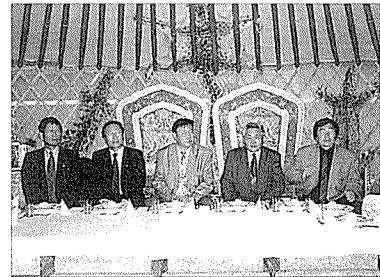
- 제1호 : 부산건축사회 회비 미송금 문제에 대한 협의
- 부산건축사회 회비 미송금에 대하여 감사에게 수시감사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차기 이사회

에서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함.

- 제2호 : 특별대책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우리협회, 몽고 방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몽고건축사회 대표단과 함께

〈참고자료〉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가 있는 법령

관 련 법	별칙대상자	업 무	별 칙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 제19조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공사가 실기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허가, 지정, 인가, 협의, 해제 등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기사업법 제65조의2	-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의 임원 및 직원	- 자기용발전설비변경신고접수 - 전기설비검사 및 임시사용의 허용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기공사사업법 제33조	-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사업자등록접수, 변경신고, 시공능력평가 - 전기공사기술자 관리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도시가스공사사업법 제45조의2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완공도면접수,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안전교육 실시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8조	- 위탁업무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산업표준화법 제42조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산업표준의 제정, 폐지, 인증기관지정 및 업무정지 - 품목, 종목, 규격의 지정명령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0조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공사시공능력평가, 건설공사실적신고 - 경영실태조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내지제132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53조의2	-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本條新設 94·1·7]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실행계획인가, 상하수도사업 인가 -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	-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

우리협회는 한몽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지난 95년 상호교류협정을 맺고, 우리협회 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때 몽고 대표단을 초청하여 양국사업계획서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의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97년에는 서울에서 서로 격년으로 초청, 방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 해는 우리 협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몽고를 방문했다. 이의구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대표단이 참가한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건축사캠프촌 건설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몽고협회의 골프장 건설에 기술적 자문을 하며, 북한 건축사의 국제 건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상호 건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9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역건축사협의회 (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에서는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포럼을 격년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Asia : The State of The Architect라는 주제로 오는 9월5일(화)~9월9(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되며, 우리 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협회메일서버의 확충에 따른 변경

◇세팅 순서

- 1) 바탕화면에 있는 outlook express를 더블클릭하여 실행
- 2) 메뉴 중에 계정을 선택
- 3) 메일계정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일서버를 선택한 후 등록정보를 클릭
- 4) 등록정보 창에서 서버라는 메뉴를 선택
- 5) 서버설정에서 기존의 POP3를 확인한 후 SMTP,POP3서버란에 각각 mail.kira.or.kr이라고 변경
- 6)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적용을 클릭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메뉴의 배달을 눌러 에러가 없음을 확인

기타 설정시 문제가 있으면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메일서버의 확장 및 분리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알림)

※ 주의: 메일서버의 사용은 사용자하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함.

건축사자격시험 실시

9월 3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올 해 건축사자격시험이 9월 3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부산, 광주 세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험시간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시험
○ 건축법규 - 10:00 ~ 10:50 (50분)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설계 - 12:00 ~ 18:00 (360분)	10:00 ~ 12:00 (120분)

시험장소

구분	시험장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편
서울	제 1 시험장	00001 - 01968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도보 15분
		30004 - 30197 014 - 074			
	제 2 시험장	01969 - 02971	광진중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도보 10분
	제 3 시험장	02972 - 03928	자양중학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10분
	제 4 시험장	03929 - 05000	광장중학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지하철 5호선 광니루역 도보 10분
부산	부산시험장	10001 - 11999	경남공업 고등학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 서면, 범내골역 도보 15분
광주	광주시험장	20001 - 21196	동신중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역, 시험 10분 (차량이용)

건축자재정보 회원가입 안내

■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재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 비용(자재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 (계재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재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송부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제도팀 허 훈
(02) 581-5711~4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강화

오는 2005년부터 4년제 대학 건축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나 건설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게 주어지던 면제혜택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건축설계분야 대외개방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이 건축사의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의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처도록 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건축사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안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따라서 대상자중 건설기술 자격취득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건축분야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5년 이상 경력자,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통산 7년이상 경력자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 이밖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산정시 예비시험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이전의 경력도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

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 디자인 공모전 개최

9월 15일까지 응모신청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준비위원회와 성남시에서는 '미래 도시 이미지 디자인 / 복합 문화 공간 (Millennium Community Center)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성남시환경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

새천년 준비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지역은 자유 선택이며, 전국 환경디자인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관련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공모전의 1등상에게는 상패와 3천만원의 상금이, 학생공모전의 대상에게는 상패와 5백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입선작은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기간 중 전시되며, 입선작은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문의: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운영본부

Tel : (02) 3147-1192, 1193, 1434

Fax : (02) 3147-1194

E-mai : seoul2000@millenniumed.org